國際通商秩序上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에 관한 所論

조선대 법대 교수·변호사 金 起 暎

논문요약

1994년 WTO의 탄생으로 세계는 국제통상에 있어 法의 支配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통한 인류복지의 증진과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競爭規則의 정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통상과 관련하여 인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소위 New Round) 역시 WTO 및 OECD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인류의 업적과 향후의 동태적 발전에 있어 인권법적 시각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즉 경제적 實利추구를 위한 전략적·국제경제법적 시각과 함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고는 국제통상을 주도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국적기업의 본질을 살피고, 국제사회에 있어 통상과 관련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범주, 기존의 인권보장활동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인권보장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試論的으로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주제어】 다국적기업, 인권, 미국의회, 세계인권선언,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 국제인권법, 국제통상

Multi-national corporation, Human rights, U.S. Congres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lien Torts Claims A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Trade

*논문접수 : 2005. 6. 3. *심사개시 : 2005. 7. 1. *게재확정 : 2005. 8. 9.

〈目　　次〉

Ⅰ. 序 論

Ⅱ. 多國籍企業의 本質

Ⅲ. 國際通商, 多國籍企業 그리고 人權

Ⅳ. 人權의 範疇에 관한 合意導出의 問題
1. 理論的 檢討
2. 人權範疇의 具體的 考察

Ⅴ.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義務에 대한 當爲性問題

Ⅵ.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遵守 實質化를 위한 試論的 接近
1. 多國籍企業과 人權의 함수에 관한 基本模型
2.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實質化方案에 관한 基本模型

Ⅶ. 多國籍企業과 人權保障을 위한 將來의 課題

Ⅷ. 結 語

Ⅰ. 序 論

새로운 세기는 여전히 경제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각국은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1947년 GATT가 창설된 이래 동 기구는 국제통상질서를 관리하는 중심적 국제기구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리고 동 기구에 의한 국제통상의 국제적 규제·관리에 있어 露呈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7년여의 긴 UR협상과정을 거쳐, 1995년 국제사회는 WTO 國際通商管理體制를 탄생시킨 바 있다. WTO의 탄생은, 첫째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문제 등 새로운 무역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의 도출필요, 둘째, 회색조치 등 치외법권적 성격의 규제관행철폐 및 법의 지배의 실현, 셋째,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逆滿場一致制 및 상소제도의 도입 등 사법적 성격의 강화, 넷째, 국제통상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WTO의 탄생배경은 국제통상현실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의 전환을 배경으로,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

한 대응, 일방주의의 포기와 다자적 접근방식의 중시, 통상관리체제의 민주화, 사법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법의 지배의 실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WTO는 이를 통하여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하고, 각국간 공정경쟁의 원칙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WTO 탄생후 10년이 되어 가는 지금 WTO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기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시켜 나아가고 있다. 경제와 통상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이 시점에서 국제교역의 주된 행위자인 다국적기업을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인권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물론 인권과 국제통상문제는 어떠한 한 분야 또는 어떤 일방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통상에 있어 인권문제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첨단산업의 약진에 따른 인권문제, 농산물 교역과 인간 최소한의 권리인 먹을 권리의 문제,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국제무역과 이에 상응하는 인권문제, ER이라고 불리우는 환경라운드와 인권문제 등 실로 광범위하다. 本稿는 국제통상과 인권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생각되는 다국적기업에 초점을 맞춰, 국제통상과 인권문제를 논하려 한다.

Ⅱ. 多國籍企業의 本質

다국적기업과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다국적기업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이란 용어는 릴리엔탈(D.E. Lilienthal)이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버논(R. Vernon), 로빈슨(R.D. Robinson), 킨들버거(C.P. Kindlerberger) 등 많은 학자들이 이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유형화한 바 있다. 학자들의 정의는 자신의 이론전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각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이라 함은 직접투자를 통하여 1국 이상에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해외자회사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UN은 그 보고서에서 다국적기업을 정의하기를 "다국적기업은 자산, 판매, 생산, 고용 등의 활동을 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해외지사나 해외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였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2)]

첫째, 시장확보에의 동기이다. 이는 다국적기업 해외투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바, 그것은 해외투자가 보다 좋은 경쟁여건과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해외에 투자한다. 즉 현지국의 저임금 등 생산원가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지국에 생산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각국간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를 이용하여 자본의 한계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셋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은 광업분야에서 보듯이 해외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자원보유국에 투자하게 되며, 이로써 안정된 제품판매수익을 유지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기술 및 정보확보문제이다. 선진현지국에의 투자는 투자지역의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실리콘 밸리에의 한국기업 진출 및 모험사업(Venture business) 등이 그러한 예이다.

다섯째, 현지국정부의 지원이나 조세정책상 혜택 등이 해외투자를 촉진하기도 한다. 선진국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많

1) 염운택, "우리나라 다국적기업과 국제화전략", 경우논집 19집(1988), 118-120면.
2) 염운택, 앞의 논문, 120-122면.

이 볼 수 있다.

이렇듯 다국적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를 최대가치로 여기는 "기업"이다. 무역의 자유화 및 무역의 확대, 세계단일시장화 등 기업활동의 세계화현상에 발 맞추어 최대이윤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첨단의 경영감각과 이론에 근거한 기업경영의 한 행태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확보와 기업윤리의 강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3)]

Ⅲ. 國際通商, 多國籍企業 그리고 人權

국제통상은 주지하다시피 리카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바탕한 국제간 교역의 필요성에 그 이론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세계경제는 생존을 위하여 국가간 교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힘들 뿐만 아니라, 가사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역하지 않는 한, 현대의 국제사회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급속하게 발달하는 과학기술을 따라갈 수 없고, 소득의 확대 및 높은 국민복지수준의 달성은 무망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경쟁의 확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WTO는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블록화, 주요 경제대국의 WTO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국제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WTO체제에 대한 회의도 있을 수 있지만, 10년여의 활동을 돌아보건대 국제무역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황삼생,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경영윤리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2집(2003) 참조.

WTO는 분명 세계라는 單一市場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규칙의 확보라는 숭고한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4] 세계경제의 관리자로서 WTO는 144개국에 달하는 자신의 회원국경제에 관련된 법령·행정조치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WTO협정에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헌법은 제9장 경제질서의 장에서 경제에 관련된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이에 근거하여야 하고, 또한 동 조항들은 공권력행사의 한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WTO체제아래에서 대한민국정부의 경제에 관한 공권력행사는 WTO질서에 부합하여야 하는 또 다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헌법은 우리와 같이 경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계약조항(Contract Clause)을 위시하여 散在한 헌법조문에 바탕하여 국가경제를 영위하고 있다. 미국 또한 WTO질서에 부합하는 법령과 제도를 영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다양한 성격의 복합체이다.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제행위를 하게 되지만 물질적 만족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다. 인간의 행복추구에의 권리는 미국헌법전문에 선언된 이래 각국 헌법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렇다면 국제통상에 관한 WTO협정과 인권은 어떠한 함수관계에 있는가? 자국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제전쟁의 현실속에서 通商에 관한 국제규범은 어떠한 인권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으며,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와 국제통상의 합리적 규제라는 WTO의 임무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민

4)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1999), 111면 참조.

대우 등 비차별의 원칙, 각국 국내법의 무역규제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 보장, 무역장애가 될 수 있는 부패관행의 철폐 등이 공정경쟁과 무역의 확대라는 WTO 본연의 임무임에는 틀림없다.[5] 그러나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WTO의 새로운 환경라운드, 노동라운드 및 국제투자문제 등에 관한 논의는 향후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人權不良國家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인권보장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권의 문제와 국제통상규범과의 함수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법의 위계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기본법(최고법)에 인권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예지만 통상에 관련한 국제규범이 자국 기본법의 인권조항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과 조약의 위계에 있어 조약을 헌법 다음의 位相을 갖는 법률 또는 행정행위쯤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법논리적으로 WTO하의 많은 협정들은 규범통제제도를 가지고 있는(대부분의 회원국이 규범통제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회원국 헌법재판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하에서는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때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WTO의 많은 협정들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WTO의 제 협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때에 협정의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위를 갖는 WTO 상소기구와 회

5) 이춘삼, 앞의 책, 113-118면.

원국 헌법재판기관의 의견이 갈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WTO는 국제기구이므로 불만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외교통상을 책임지는 회원국 행정부처와 국내 사법기관간의 권력분립과 견제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게 된다. 물론 외교통상부서의 법률전문가가 자국의 인권에 반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프랑스와 같이 司法的 性格의 권력기관이 헌법에 비추어 조약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다면 보다 예방적일 수 있다.[6] 만일의 경우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회원국이 탈퇴한다면 144개국이 WTO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 나라는 국제통상에 관한 건전한 파트너로서 취급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당 회원국의 경제적 고립을 의미할 수도 있다. WTO에 뒤늦게 가입한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WTO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국가경제를 영위해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통상질서하에서 인권보장문제는 다양한 권력주체간의 이해와 대화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 사실 인권문제에 있어 세계 각국은 그 실체에 관하여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인권장전, 각국 기본법상의 인권조항 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7] 그것이 WTO의 많은 협정에서 인권에 관한 明示的 規程을 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무엇인가? 국제통상과 인권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

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1), 1056-1057면 참조.

7) 국제사회에 있어 인권은 국제인권장전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다.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제한, 재산권의 보장과 그 제한, 헌법 제36조 2항 등 기본권유보조항, 경제질서 등이다.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자유무역에 방해가 될 것이고, 재산권의 보장을 소홀히 하면 WTO 지적소유권협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脫規制化措置(Deregulation)는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세계경제의 요청에 따라 외부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우리 경제가 자유화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적 이해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왔지만, 그동안 국제통상기구가 개도국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개발도상국의 경제부양을 통한 직·간접적 인권보장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경제적 자유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의 추구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에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복제인간의 개발을 인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시대에서 어떠한 인권이 문제되는가? 책임없는 정보제공자의 인터넷 음란물로 인한 인격의 피해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생산국 또는 투자국의 영업 및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무역의 자유화라는 대세에 따른 것이지만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통상질서하에서 인권보장의 문제는 광범위한 문제영역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행위자인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인권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Ⅳ. 人權의 範疇에 관한 合意導出의 問題

1. 理論的 檢討

다국적기업과 인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human rights)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법사상사적으로 인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自然權論과 국가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한정되어 국가권력에 의하여 창설되는 경우 비로소 권리화된다는 實定權論, 소위 法實證主義的 見解(legal positivism)가 대립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법실증주의적 인권관에 의하면 국가가 성문화 또는 관습법에 대한 확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권리의 창설과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한, 당해 가치는 법적인 의미에서 권리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자연권론은 인권을 천부적 성격의 것으로 보아 인간의 권리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며, 국가는 단지 이를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연권론의 약점은 동 이론이 주장하는 천부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현대사회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각국이 인식하는 인권의 개념범주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성문법, 관습법, 각국의 성문헌법 및 관습헌법 등에 의하여 인권을 실증적으로 확정하려 할 것이고, 자연법론적 관점에서는 국제기구나 국가라는 것은 단지 천부인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기본법은 그 나라의 윤리 및 국가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를 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의 범주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8] 그러나 연혁적으로

8) Douglas Cassel, Corporate Initiatives: A Second Human Rights Revolution?, 19 Fordham Int'l L.J., (1996); Erin Elizabeth Macek Scratching the Corporate Back: Why Corporations have no Incentive to Define Human Rights. Minn. J.,Global Trade, (2002).

혹은 법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프랑스 인권선언 및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멀게는 영국의 대헌장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혁명적 선언 등에 근거하여 인권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인권선언 및 각국의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권범주를 확정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각국의 기본법 대부분은 근대시민사회가 지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9] 이를 통하여 인신의 자유, 아동노동의 금지,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먹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의 권리,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의 불가침, 독과점의 금지 등 경제적 자유의 보장, 수면에의 권리, 남녀 평등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침의 인권을 도출해낼 수 있고, 국가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에 바탕한 인권의 범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관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향후 UN, OECD 등 주요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범주에 관한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는 항상 善한 것이 아니다. 소위 인권불량국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인권불량국가는 그 국가의 인권법령체계가 근대시민사회의 보편적 인권관념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제적 문제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이데올로기 내지 국가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인권수호에 관한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 특히 UN이나 인권수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선진문명국의 역할이 요청된다. UN 인권선언 및 문명국헌법이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고, 反人道的인 인권탄압을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9) Frank C. Newman & David Weissbrod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olicy and Process 5-16 (2d. ed., 1996).

2. 人權範疇의 具體的 考察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인권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사회권의 침해가 가장 문제된다. 다국적기업이 경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윤추구의 극대화만을 위하여 저임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무임금초과근로 등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근로조건을 위반할 수 있으며, 광산, 유전 등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문제 등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위협한다.

둘째,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생명권 등 자유권의 침해가 문제된다. 자유권의 침해는 대개의 경우 현지국정부의 묵인하에 또는 현지국정부와 공모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국적기업과 결탁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 바, 현지국이 개발독재적, 비민주적 성격의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 유전 또는 광산개발과 관련한 노동운동의 탄압 및 투옥, 사형,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노동자의 강제이주 등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 국제인도법상의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함으로써,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생화학무기를 생산하여 테러국가나 인권불량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반인도적인 고도의 살상무기

10)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인권의 범주에 관하여, Diane Orientlicher and Timothy Gelatt, Public Law, Private Actors: The Impact of Human Rights on Business Investors in China, 14 Nw. J. Int'l L. & Bus. 66, pp. 108-16.

를 개발하여 간접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가담하는 군수품생산기업도 있다.

Ⅴ.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義務에 대한 當爲性問題

다국적기업은 기업으로서 영리추구를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법적으로 하나의 행위주체에 불과하고, 본국 또는 현지국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의 책무는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에 있으며,[11] 다국적기업은 인권보장에 관한한 제3자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인권보장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리적 근거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은 그 경영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그 영향력이나 기업활동양상이 준국가적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위 국가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익적 성격의 단체 또는 기업에 국가성을 의제하여 인권보장의무를 지우기도 하는데, 이를 유추하여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의무를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12]

둘째, 현대의 문명국은 재산권의 절대성에 대한 가치적 확신으로부터 재산권의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디일 입법을 시작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보

---

11) Barbara Frey, The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6 Minn. J. Global Trade, p. 153 (1997).

12) Su-Ping Lu, Corporate Codes of Conduct and the FTC: Advancing Human Rights through Deceptive Advertising Law, 38 Colum. J. Transnat'l L. pp. 603-604 (2000).

장에 대한 사회적 수정을 가하였으며,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헌법도 명문으로 재산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재산권은 그 자체로 신성하나, 또한 이는 사회적 산물이다. 기업은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기업이 바탕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의무를 구성함에 있어 보다 법적으로 의미있는 방법이 있다. 소위 국제인권법의 수평적효과이론인 바, 동 이론은 미국과 독일 등 일부국가들의 헌법해석을 통해 발전한 이론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확장하는 제3자효이론 또는 국가행위이론에 바탕하고 있다.[13]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수범자를 국가로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도 일정한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또한 국제인권장전의 여러 조항에서 개인의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한다.[14] 예컨대, 세계인권선언은 서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할 것을 확인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사람"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부담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A규약 및 B규약의 서문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보장에의 노력의무 등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인권보장의무를 국가에 한정하는 소위 국제인권법의 수직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평적효과이론의 문제점은 다

13)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이론에 관하여는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민주법학 제22호(2002), 226-239면, 참조.

14) 정경수, 앞의 논문, 218면.

국적기업과 같은 국가아닌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절차가 없다는 데에 있다. 즉 다국적기업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에 직·간접으로 개입된 경우, 국제인권규정을 강제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영미의 경우에는 국내사법절차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규정을 침해하는 기업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도 다국적기업이 개입된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허용한다고 보면, UN의 인권선언 및 문명국의 헌법에 바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그리 무망한 일은 아닐 것이다.

Ⅵ.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遵守 實質化를 위한 試論的 接近

1. 多國籍企業과 人權의 함수에 관한 基本模型

국제통상에 있어 그 주역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국제무역에서의 역할은 통계가 입증하듯이 지대하다.[15] 이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고 연혁적으로 꽤 오래된 일이다.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다국적기업과 인권문제는 이미 UN의 신생독립국그룹인 77그룹에 의하여 의제화 된 바 있다. 사실 일부 다국적기업은 투자국의 국민경제규모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투자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외부의 불변변수(socially given)"

15)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는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및 대출총액을 초과한다. Ann-Marie Erb-Leoncavallo, The Road from Seattle, UN Chronicle, Jan. 1, 2000.

로 보는 입장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다국적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므로, 이익추구가 가장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익추구를 지상목표로 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경우 인권의 보호를 위한 기대가능성이 희박하다.[16]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지출이 현실적 이익으로 보상되지 않는 한, 그러한 지출의 암묵적 요구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국적기업과 인권보장문제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용, 즉 기업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성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다국적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권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몇몇 기업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의 입장에서 인권의 제고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이는 밀톤 프리드맨 등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이기도 하다.[17]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이며,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윤리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론주의적 경제학에서의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고, 윤리와 책임에 관한 관습을 따르며, 공중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일부 경제학자는 최소한 인권과 기업의 이익은 모순·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치라는 改良的 견해를 취하기도 한다. 동 견해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는 투자의 외부효과를 통하여 사회의 개방화 및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인권의 제고 등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18]

---

16) Orientlicher and Gelatt, supra note 10, pp. 96-98.
17) Cassel, supra note 8. p. 1963, 1977.
18) Id. 1980.

둘째, 인권문제는 기업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socially given)이 아니라, 기업은 적극적으로 인권 등을 포함하여 윤리적 제고를 위한 "사회 적응적(socially responsive)"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9] 이는 기업의 수익과 사회여건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사회적응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경영학적 접근방법에서 강조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1960년대 "경영윤리"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대학에서 동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미국은 전기산업의 가격조작을 계기로 통상부에 경영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64년 시민권법에서는 기업도 시민권보호를 위한 주체가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셋째, 기업의 윤리확보 등 인권보호문제를 "사회적 의무(socially responsible)"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20]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 적응적 (socially responsive)"차원을 넘어, 기업의 윤리확보를 소비자의 권리차원에서 바라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업이 투자를 통하여 사회로부터 얻은 수익은 당연히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권보호 등 기업의 윤리에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내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무역의 확대와 인류복지의 증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국적기업을 위하여 무역장애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통상의 이념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선진국에 기업본사를 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에 다양한 형태의 지사를 두

19) Thomas F. McMahon, Socio-Ethical Issues: Two Conceptual Frameworks in Profit and Responsibility 17 (Patricia Werhane & Kendall D'Andrade eds., 1985).
20) Id. p. 23.

어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열악한 인권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간다. 이러한 경우 현지국의 묵인과 다국적기업의 무관심이 결합하여 현지국의 인권상황은 답보 내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다국적기업의 맹목적인 영리추구와 현지국 인권수준의 열악으로 인하여 본국의 인권수준은 물론이고, 인류 보편적인 UN기준의 인권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윤리문제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향후 저개발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될 것을 고려해 보면 남의 일만은 아니다.

2.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實質化方案에 관한 基本模型

(1) 自發的 企業倫理綱領채택을 통한 方案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의무의 당위성이 전제된 경우,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자발적 회사윤리강령제정을 통한 방법이 있다.[21]

다국적기업은 기업으로서 본질적으로 이익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회사윤리강령의 채택에는 소극적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30여 년간 다국적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강령채택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재 미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약 10%가 회사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증가추세이다. 다국적기업의 윤리강령채택의 가장 큰 동인은 소비자그룹의 압력이다. 즉 소

21) 1970년대 이래 UN 및 정부간기구 등은 다국적기업의 윤리강령의 채택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P.T. Muchlinski,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Law pp. 5-11, 457 (1995).

비자들은 정서상 또는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인권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소비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i) 소비자들의 정보에의 접근 정도이다. 많은 소비자가 다국적기업과 인권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i) 기업이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고, 현지국이 느슨한 인권관련 법령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권보장을 위한 자발적 윤리강령 제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미국의 Strauss & Co.가 경영상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라든지, Levi Strauss 같은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기업이 1990년대 재정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회사조치 등은 자발적 윤리강령제정 및 그에 따른 경영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ii) 자발적 윤리강령은 회사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외부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고, 회사내에서의 구속력도 공개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iii)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 및 피고용인이 기업과 관련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 기업의 수익극대화와 자신들의 신분보장을 연계함으로써, 결국 영리성에 기초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주주중심으로 경영되는가, 경영인에게 많은 재량을 주어 경영인중심으로 경영되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요컨대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여보려는 노력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22]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윤리강령에 의한 인권보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생산과 공급, 유통 등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을 선언하는 유형이다.[23]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선언은 자사 및 자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의한 강제노동, 죄수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K-Mart, J.C. Penneys, Phillips-Van Heusen 등 많은 대기업이 이러한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월마트는 1995년 방글라데쉬 공장에서의 아동노동에 관한 TV방영을 계기로 매우 강도높은 윤리강령을 마련하였다. 즉 적정보수의 지급, 노동시간 및 미국통상법의 준수를 선언함은 물론 포괄적으로 인간 기본권 보장의 사명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인권보장을 선언하는 유형으로서, 첫째의 경우보다 드물다. 즉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적 사상의 강요, 내심의 자유 및 사상표현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 등의 금지를 윤리강령에 포함시키는 경우로서, Reebok과 같은 기업은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서는 기업행위를 중단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동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나설 것을 선언하고 있다.

셋째, 다국적 기업의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을 선언하는 유형으로서, 동 선언은 인권불량국가에의 투자를 금지한다. Levi Strauss & Co.는 투자에 관련한 人權保障 社規를 갖고 있는 대표적 다국적기업

---

22)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외부의 권위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Jeremy Lehrer, Trading Profits for Change, 25 Hum. Rts. 21, 23 (1998).

23) Paul L. Ferrari, U.S. Business ad Human Rights Guidelines, Soc. Issues Service 1995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Washington D.C.), Mar. 3, 1995, p. 4.

인 바, 과거 Global Sourcing Guidelines라는 사규에 따라 버어마와 중국에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한 바 있다.[24]

(2) 國內法的 規制를 통한 方案

둘째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본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국내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토록 하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법률과 같이 국내법을 통하여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본국의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에 자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인권상황이 문제시되는 국가에 투자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지사가 국내법인 형태가 아니거나, 투자의 자유화에 관한 국제협정 등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결국 "國內法의 域外適用"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현지국 스스로의 인권보장에의 노력을 통하여 다국적기업과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25] 인권보장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다. 현지국은 자국의 헌법 및 UN 등 국제기구가 정한 인권보장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3) 國際法的 規制를 통한 方案

다음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

즉 ILO나 OECD, 또는 UN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을 규제할 수 있으나, ILO나 OECD는 제한된 기업행위준칙만을 가지고 있는 등 다국적기업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UN도 국제인권영역에서

24) Id., p. 5

25) 사실 인권보장의 종국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는 UN 등 국제기구가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Frank C. Newman & David Weissbrodt,, supra note 9.

보여준 그동안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선언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활동이 미미하다.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UN 활동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그동안 UN총회나 UN의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6] UN은 특히 냉전의 종식이후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개발도상국과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다국적기업의 국내문제에의 불간섭의 원칙 등 정치·경제적 접근만을 강조하고 현지국의 인권문제에는 소극적이다.

(ii) UN은 국제공법상의 기구로서 UN의 협정이나 선언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만을 규제한다. 그러나 최근에 가정내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금지 등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0조 및 경제사회이사회 협약 제5조 1항 및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선언 등이 개인과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UN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법제적 관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해석론상 이러한 규정들이 당해 개인이나 기업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iii) 다국적기업과 현지국의 문제에 있어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그룹인 77그룹과 서구선진국간에 치열한 정치적 대립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77그룹은 1974년 UN총회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고, 나아가 1990년 이에 관한 구체적 초안에 다국적기업의 현지국에서의 기본적 인권보호의무를 조문화함으로써, 현지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국제법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그

---

26) Id.

러나 소유경영, 부패방지, 조세 및 기타 기업활동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고, 불법적 수용, 지적 재산권 및 수익환수 등 현지국의 문제는 등한시하였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과 서구선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동 초안의 채택이 좌절된 바 있다.[27]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정 등 국제법적 방안을 통한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국제인권법의 수평적효과이론에 따라, 일정한 경우 선진문명국의 국내법절차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4) 影響力있는 文明國, 非政府間 機構 및 壓力團體 등을 통한 方案

마지막 방안으로 미국, 비정부간기구, 노동조합, 소비자 그룹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있는 행위주체 등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가. 序 說

경제의 세계화현상으로 인하여 다국적기업은 보다 자유롭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권보장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 및 개발도상국 등 국가의 경제발전이 외자의 유치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다국적기업은 매우 손쉽게 안이한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투자의 자유화라는 WTO의 지향목표에 비추어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global power들이 다국적기업을 견제하고 인권수호를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아동 및 죄수노동에 의한 상품의 교역금지, 버어마나 중국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제한 등이 문제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쌍무협상 등을

27) Muchlinski, supra note 21, p. 593.

수단으로 국제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28] 물론 통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는 그 보호주의적 경향 및 일방주의적 접근으로 인하여 양비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정부간 기구도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의 인권을 제고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권장·감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역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그룹이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影響力 있는 文明國의 역할

(가) 미국의회 및 행정부의 역할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준수 실질화를 위한 문명국의 역할로서 미국정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 바, 미국의 입법부 및 행정부는 법령입안 및 집행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규제에 있어서 미국의회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 미국의회는 죄수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미국수입을 금하는 Hawley Tariff 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본격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 헨리 키신저는 미의회 7차회의에서 다국적기업에 관한 UN 협약체결을 제안하였으나, 그 내용은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권리와 현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만을 선언하였을 뿐이다.

셋째, 경제제재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규제로서, 미국기업이 인권불량국가에 투자하거나 그러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과거에 미국의회는 쿠바, 이란, 리비아 등을 인권불량국가로 지목하고, 미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도 그러한 나라에 투자하거나 교역하는

28) 미국정부는 인권불량국가에 대하여는 경제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22 U.S.C. s 2151 (n) (1990).

것을 금지하려 시도하였으나, 주변국의 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넷째, 1977년 미국기업의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하는 외국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다섯째, 198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분리주의에 반대하여 同國에서의 미국기업의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반분리주의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여섯째, 1989년 상원은 러시아의 민주화 및 인권옹호, 특히 러시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행동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일곱째, 1991년 미국의회는 러시아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국적기업 행동강령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동 문제에 관하여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는데 그쳤다.

여덟째, 1995년에는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이 자유화 및 민주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SLORC라고 불리우는 버어마 군사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하였으나,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자유화정책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아홉째, 최근의 입법안으로는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아동노동방지법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물론 미국내 모든 소매업자의 판매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행정부는 인권과 통상문제에 있어서 인권보다는 국가의 통상이익, 무역자유화 등에 보다 우선가치를 둠으로써 의회보다는 소극적이었다. 행정부는 국제교역과 인권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혜국대우의 철회,[29] 경제 및 안보지원의 철회,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배경으로 한 금융지원의 거부 등이다.

---

29) 19 U.S.C. s 2432(a) (1994).

클린턴 행정부 역시 종래의 정권과 같이 무역자유화 등 통상논리를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악화된 인권상황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1995년 5월 일반적 선언의 형태로 인간의 기본권과 노동에의 권리에 관한 모범기업강령을 발표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30] 동 강령은 인권옹호론자와 통상론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인권옹호론자들은 동 강령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고, 기존 법령을 답습하고 있으며, 구속력이 없는 강령의 형태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에 통상론자들은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혼동하고, 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비판하였다.

(나)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31] (Alien Torts Claims Act: ATCA)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법령으로 外國人不法行爲請求法(ATCA)을 들 수 있다. 동법은 외국정부 및 공무원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동법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외국인도 고문 등 정부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국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종래 외국인의 보통법상 불법행위청구권을 규정한 外國人不法行爲賠償法(Alien Torts Statute)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동법을 근거로 (i) 외국정부의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32] (ii)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위한 모범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의 해석상 미국연방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主權免責法(Foreign Sovereign

30) 주요내용에 대하여 Model Business Principles, 미국 상무성 발간, 1996.
31) 28 U.S.C.A. 1350 (2000).
32) Enahoro v. Abubakar 408 F.3d 877 (2005)

Immunities Act)[33]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 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 외국정부 공무원이 현직이 아닌 경우 또는 피고 외국정부의 행위가 비권력적 성격의 것인 경우에는 미국연방법원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권면책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공무원에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는 현지국정부와의 결탁하에 또는 현지국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법은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하여 현실적인 司法的 救濟를 위한 유효한 근거법령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당해 다국적기업이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에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영역외의 외국인도 동법에 근거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해 불법행위가 고문 등 가혹행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법상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법(ATS)은 불법행위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미국연방법원에 미국정부가 당사자인 조약(the treaty)을 포함한 국제법(the law of nations)위반행위에 대하여 외국인의 제소권을 인정하는 관할권 부여법령이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당해 법령의 해석에 있어 불법행위의 유형을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해적행위 등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다국적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많은 경우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영규모, 영향력, 인권침해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 국내법정보다 미국법원이 유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33) 28 U.S.C.A 1330(a), 1602.

자세가 요구된다. 예컨대 동법상의 “the law of nations”을 국제법은 물론이고 각국의 합리적인 국내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34] 요컨대, 다국적기업과 인권불량국가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국제적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며, 인권에 관하여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각국정부는 물론이고, 영향력있는 문명국들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2004년 미얀마 주민이 석유공급관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미얀마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후, 미얀마정부, 동 정부의 국영기업, 프랑스 석유회사 및 미국 석유회사를 상대로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ATCA)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文明化된 국가에서 수용되는 明確한 槪念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35] 이는 현지국주민의 인권보다는 미국정부의 외교정책, 경제의 자유를 중시한 판결인 바, 미국법원이 국제적 인권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 문명국의 역할과 미국사례의 교훈

요컨대, 미국이 국제교역에 있어 그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권보장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 등이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규제에 나서게 되는 경우 미국의 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이익 및 무역자유화 등 경제논리가 인권보장의 논리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무역자유화는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34) 입법자가 “the international law”가 아닌 “the law of n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5) John Doe I v. Unocal Corporation, 395 F. 3d 932 (2002)

보장함에 있으므로,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힘든 측면이 있다.

둘째, 인권보장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미국사회에 뿌리 박혀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경쟁에 있어 불이익한 위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의회나 정부의 법령 또는 강령선언 등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셋째, WTO 등 국제기구가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등을 지향하면서, 인권보장의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미국만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인권수호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의 분발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보장의 최종 책임은 다국적기업의 현지국 정부이다. 그러나 현지국이 최빈개도국 또는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사실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여 인권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 본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 미국의 버어마자유화 및 민주화에 관한 법에서 인권문제가 배제된 것도 양국정부간(미국과 버어마 민주화세력간)의 최종협상에서 버어마의 통상개방이 인권문제보다 시급하다고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무역자유화 및 비차별의 원칙 등 국제통상법의 기본원칙 및 이에 기반하고 있는 통상관련협정들이 경제논리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인권수호조치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제사회에 있어 통상론자들은 인권을 이유로 한 경제제재조치 등의 합법성여부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비판하기도 하며, 인권보장이 무역장애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여섯째, 법원의 사법정책이 행정부나 의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든 미얀마주민사건의 경우 미국

법원은 부시행정부의 neo-conservative의 영향아래 미국의 國益을 우선시하고 국제적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명국이 인권보장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국제적 합의 및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함은 물론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인권보호에 있어 보다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非政府間 機構 또는 영향력 있는 私人의 活動

다음으로 사적 영역에서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비정부간기구의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정부간 기구의 활동은 권고의 차원에 머무르는 형편이며, 다국적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인의 주도로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있어 비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 두 사례가 있다.

첫째의 사례는 필라델피아 흑인목사인 레온 썰리반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분리주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창한 기업윤리강령으로서, 소위 썰리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36]

썰리반 원칙은 직장과 사회에서의 비차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무에 관한 6가지 원칙을 담고 있는 바, Exxon, Mobil, IBM, Citicorp, Merk 등 125개 기업이 서명하였다. 특히 기업의 비차별활동을 점수화하여 발표하고, 너무 많은 기업의 참여로 모두 가입시키지 못하기도 하였다. 흑백분리교육 철폐를 위한 투자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있어서의 흑백통합을 이루어 냈다.

둘째의 사례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이자 국제사면위원회 설립자인 센 맥브라이드의 이름을 딴 맥브라이드 원칙을 들 수 있는 바,[37] 동

---

36) Stratford P. Sherman, Scoring Corporate Conduct in South Africa, Fortune, July 9, 1984, p. 168.

원칙은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고려한 비차별 원칙을 자세하게 선언하고 있다. 종파에 따른 취업·훈련·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직장내 도발적·종파적·정치적 상징표현의 금지 및 종파적 폭력행위로부터의 안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썰리반 강령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즉 강령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계기가 부족하였고, 맥브라이드와 정부와의 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 및 외자유치 등에 대한 장애 등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 것이다. 강령의 성공여부는 참여기업 주주의 의사가 결정적인 바, 많은 기업이 주주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미국 동부의 5개주는 동 원칙을 투자지침원칙으로 채택한 바 있다.

사적 영역 내지 사인 등이 기업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사인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대상범위가 작다. 위에서 본 예와 같이 흑백차별이나 종파적 문제 등 주도하는 사인이 속한 공동체(위 예에서는 미국)의 정서나 정의감 등에 기반하여 정서적으로 관계가 깊은 국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둘째, 대상범위가 좁지만, 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비정부간 기구에 의한 인권보장운동보다 그 효과가 실질적일 수 있다.

셋째, 사인이 제안하는 원칙 또는 강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다국적기업이 해외법인의 형태로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하여 문제국소재 기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으므로 "국내법의 역외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37) Dermont O'Callagahn, From Belfast to Brixton: Could New Monitoring Measures Cross the Irish Sea?, Perssonnel Mgmt., Aug. 1988, pp. 44-45.

Ⅶ. 多國籍企業과 人權保障을 위한 將來의 課題

향후 무역장애의 제거와 세계의 단일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활동영역은 보다 넓어지고 자유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익추구만을 지향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는 보다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국제기구를 통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soft law적 차원을 넘어 보다 구속력있는 국제규범을 산출해 내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입법적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작금의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해볼 수 있다.

첫째, 積極的 侵害形이다. 적극적 침해형은 다국적기업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불법성을 갖는 경우로서,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회사나 현지공장 등의 종업원이 민주화운동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문명국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따라서 이는 다국적기업이 행위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로 세계인권선언 제18, 19, 20조 및 21조는 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38] 미국 Miller 법 제401 (b)(1)에서는 취업시 정치적 신조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39]

둘째, 消極的 侵害形이다. 소극적 침해형은 다국적기업이 적극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침해를 묵인한 경우이다. 예컨대 평

3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 217, U.N. GAOR, 3rd Sess., at 71, U.N. Doc. A/810 (1948) 참조.

39) H.R. 3489, 102d Cong. s. 401 (b)(1) (1991).

소 노동조합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다국적기업의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노동자를 규합하고, 현지국정부가 당해 노동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이다. 이때 당해 다국적기업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현지국정부의 침해를 묵인·방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해 종업원의 체포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개인의 안전, 제9조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3조 (4) 노동자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40] 미국의 Miller 법에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협약 제87조에서도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단결의 자유를 선언하고 특히 노동조합결성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非侵害統制可能形이다. 비침해통제가능형은 다국적기업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당해 기업이 그러한 인권침해의 방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여종업원이 남편의 가정내 폭력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함으로써, 당해 여종업원이 형식적으로 노동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때에 다국적기업은 적극적·소극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종업원을 해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최근에 제안된 바 있는 UN 다국적기업강령은 비차별의 원칙, 평등권, 개인의 안전 및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 기업강령은 선언적일 뿐만 아니라,[41] 특히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고용유지의무나, 가정내 폭력방

40)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July 9, 1948, 68 U.N.T.S. 17 (1948).

41)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ransnational

지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의 경우 밀러법이나 클린턴 행정부의 기업윤리강령도 직장외에서의 남녀차별문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업의 사명감 또는 기업정신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나, 비침해통제불가능형의 경우보다는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적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넷째, 非侵害統制不可能形이다. 비침해통제불가능형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인권침해상황이 다국적기업에게 주어진 외부변수로 등장한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인권억압적 체제이거나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경우 또는 소수인종을 탄압하는 국가인 경우이다. 이때에 다국적기업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고,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WTO체제하에서는 투자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국은 투자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국내법은 앞서본 바와 같이 몇개국의 인권불량국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투자금지규범의 일반화를 둘러싸고 인권과 경제논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 성격의 클린턴 행정부 기업윤리강령도 투자를 금지하지는 않았고, 다만 합작기업 또는 하도급인 등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만을 선언하고 있다. 밀러법도 중국에 한정하여 인권탄압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인권옹호를 위한 기업의 성실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투자의 금지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42] 요컨대 이러한 경우 기업윤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윤의 추구가 궁극적 목적인 다국적기업이 얼마나 인권보호를 위하여 행동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업은 최소한 투자여부결정에 있어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과 관

Corporations, U.N. ESCOR, 2d Sess., U.N Doc. E/1990/94 (1990).

42) H.R. 3489, 102d Cong. s (401)(b)(9) (1991).

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인권탄압 또는 침해의 정도, 둘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기업과 현지국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 셋째,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현지국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넷째, 현지국에서의 기업경영과 인권침해와의 상관성 등이다. 기업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양식있는 기업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Ⅷ. 結 語

WTO체제하에서 세계시장은 단일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는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무역은 물론이고 금융, 통신, 법률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의 서비스무역이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의한 無通關貿易,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및 환경문제와 관련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향후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활동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가능성은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인권의 범주 및 인권보장모형 등의 논의가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규범화 작업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윤리경영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인권보장의 주된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논문은 다국적기업과 인권문제를 거시적이고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는 바,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논의를 기대하면서 문제의 성격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기업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보통 국내법적 차원의 문제에 머

무나,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UN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법원칙과 지향이념을 국내법적으로 충실히 반영할 책임이 있다. 앞의 Ⅲ장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현대의 세계는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각국의 경제적 실리추구 등의 무역환경속에서 세계시장의 단일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따라서 인권의 문제도 비단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인권에 대한 직·간접적 침해가 있는 경우, 국내법적으로는 기본권간의 충돌의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기업의 자유라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타자의 자유권 및 사회적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대륙법계에서는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권의 서열이론 등이 발달하여 있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포괄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은 종국적으로 가장 실효성있게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때에 당해 헌법재판기관은 UN 및 관련 국제기구, 입법부 및 행정부와 협력하여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보장의 다각적·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현재 국제통상질서를 규율하는 WTO체제(1994년 GATT체제라고도 함)는 기본적으로 통상질서의 수호라는 국제경제법적 마인드에 기반하여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등 기업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세계인의 인권보장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UN 및 UN산하의 전문기구, 미국 등 강대국의 활동, NGO 등 국제적 양심세력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WTO는 일반적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세계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WTO 상소기구는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해석 및 법원칙의 발견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동문제, 환경문제, 윤리문제 등을 다루는 소위 New Round에 대해 거는 기대는 크다.

넷째, 다국적기업과 인권의 문제는 종래 선진경제대국만의 문제였으나, 대한민국을 위시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종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던 나라의 다국적기업도 세계시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이미 1985년 12월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총 투자기준으로 6백 4건에 6억 2천 6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무역의 자유화 및 시장의 확대로 그 투자규모는 실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도 현지국의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경제논리만에 입각해 행동할 수는 없다. 문화대국,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의 행위준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입법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I. 서양서

Ann-Marie Erb-Leoncavallo, The Road from Seattle, UN Chronicle, Jan. 1, 2000.

Barbara Frey, The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6 Minn. J. Global Trade, p. 153 (1997).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U.N. ESCOR, 2d Sess., U.N Doc. E/1990/94 (1990).

Diane Orientlicher and Timothy Gelatt, Public Law, Private Actors: The Impact of Human Rights on Business Investors in China, 14 Nw. J.

Int'l L. & Bus. 66, pp. 108-16.

Dermont O'Callagahn, From Belfast to Brixton: Could New Monitoring Measures Cross the Irish Sea?, Perssonnel Mgmt., Aug. 1988, pp. 44-45.

Douglas Cassel, Corporate Initiatives: A Second Human Rights Revolution?, 19 Fordham Int'l L.J., (1996); Erin Elizabeth Macek Scratching the Corporate Back: Why Corporations have no Incentive to Define Human Rights. Minn. J.,Global Trade, (2002).

Frank C. Newman & David Weissbrod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olicy and Process 5-16 (2d. ed., 1996).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July 9, 1948, 68 U.N.T.S. 17 (1948).

Jeremy Lehrer, Trading Profits for Change, 25 Hum. Rts. 21, 23 (1998).

Model Business Principles, 미국 상무성 발간, 1996.

Paul L. Ferrari, U.S. Business ad Human Rights Guidelines, Soc. Issues Service 1995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Washington D.C.), Mar. 3, 1995, p. 4.

P.T. Muchlinski,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Law pp. 5-11, 457 (1995).

Stratford P. Sherman, Scoring Corporate Conduct in South Africa, Fortune, July 9, 1984, p. 168.

Su-Ping Lu, Corporate Codes of Conduct and the FTC: Advancing Human Rights through Deceptive Advertising Law, 38 Colum. J. Transnat'l L. pp. 603-604 (2000).

Thomas F. McMahon, Socio-Ethical Issues: Two Conceptual Frameworks in Profit and Responsibility 17 (Patricia Werhane & Kendall D'Andrade eds., 198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 217, U.N. GAOR, 3rd Sess., at 71, U.N. Doc. A/810 (1948).

II. 국내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1), 1056-1057면.
염운택, "우리나라 다국적기업과 국제화전략", 경우논집 19집(1988),. 118-120면.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1999), 111면.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민주법학 제22호 (2002) 226-239면.
황삼생,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경영윤리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2집 (2003).

III. 법령 및 판례

22 U.S.C. s 2151 (n) (1990).
19 U.S.C. s 2432(a) (1994).
28 U.S.C.A. 1350 (2000).
28 U.S.C.A 1330(a), 1602 (2000).
H.R. 3489, 102d Cong. s. 401 (b)(1) (1991).
H.R. 3489, 102d Cong. s (401)(b)(9) (1991).
Enahoro v. Abubakar 408 F.3d 877 (2005).
John Doe I v. Unocal Corporation, 395 F. 3d 932 (2002).